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혁신처의 정원 7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, 6급 5명) 및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3명(5급 3명)을 각각 일반직공무원 정원에서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고, 전문직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는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6. 11. 6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10. 00. ~ 1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2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윤리복무국: 복무과, 윤리정책과, 재산심사기획과, 재산심사관리과, 취업심사과

4. 소청심사위원회: 행정과

총리령 21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5”를 “24”로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70”을 “69”로, 행정주사 “21”을 “18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65”를 “63”으로, 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·공업전문관·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“10”을 “17”로 한다.

총리령 21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중 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

전산사무관 “26”을 “25”로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79”를 “78”로, 행정주사 “20”을 “17”로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“55”를 “53”으로, 수석전문관·행정전문관·공업전문관·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“10”을 “17”로 한다.

별표 4 중 행정사무관 “13”을 “10”으로 하고, 사무운영서기보 2 다음에 “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 3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총리령 제2157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 개정에 관한 특례)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총리령 제2157호 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별표 1 및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[별표 1의3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총리령 제0000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)

총계	420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419
고위공무원단	9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8
부이사관·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4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10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4
행정사무관	16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·기록연구관·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3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5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69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2
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4
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	18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2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28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12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63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전산주사	2
행정주사보	5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학예연구사 · 기록연구사 ·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2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2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	4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간호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전산주사보	4
행정서기	3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6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	1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	3

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행정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 상당(비서)	1
운전서기보	2
사무운영서기보	2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17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인사통계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발굴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인사기록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촬영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채점 담당)	1

[별표 1의4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총리령 제00000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
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)

총계	419
정무직 계	1
처장(차관급)	1
일반직 계	418
고위공무원단	9
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8
부이사관·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1
서기관	1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4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10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5
행정사무관	17
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전산사무관·학예연구관·기록연구관·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3
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25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78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12
행정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4

전산사무관	1
행정주사	17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	2
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	28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	12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53
행정주사 · 세무주사 · 통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전산주사	2
행정주사보	5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학예연구사 · 기록연구사 · 공업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2
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3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	4
행정주사보 · 보건주사보 · 의료기술주사보 · 간호주사보 또는 전산 주사보	1
전산주사보	4
행정서기	3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6
운전서기	1
행정서기보	3
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
운전서기보	2
사무운영서기보	2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17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인사통계 담당)	1
전문경력관 가군(정부 주요직위 후보자 발굴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인사기록 담당)	2
전문경력관 나군(촬영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채점 담당)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윤리복무국) ① (생 략)	제11조(윤리복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 · 윤리 정책과 · 재산심사기획과 · 재산 심사관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 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 · 과학 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으로 보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 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수석 전문관</u> -----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소청심사위원회) ① (생 략)	제15조(소청심사위원회) ① (현행 과 같음)
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, 행정과장은 <u>부이사관 · 과 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 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수 석전문관</u> 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의2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「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 제」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 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 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9조의2(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3. <u>윤리복무국: 복무과, 윤리정</u>

<u><신 설></u>	<u>책과, 재산심사기획과, 재산심사관리과, 취업심사과</u> <u>4. 소청심사위원회: 행정과</u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	<u>25</u>	<u>24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	<u>70</u>	<u>69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1</u>	<u>18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	<u>65</u>	<u>63</u>	-2
·	·	·	

· 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 · ·	· <u>10</u> · ·	· <u>17</u> · ·	+7
--	---	---	-----------

[별표 1의2]

인사혁신처 공무원 정원표(제16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 관	<u>26</u>	<u>25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 무관	<u>79</u>	<u>78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20</u>	<u>17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 주사 또는 전산주사	<u>55</u>	<u>53</u>	-2
·	·	·	
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설전문관 또는 전산전문관	<u>10</u>	<u>17</u>	+7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4]

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•	•	•	
행정사무관	<u>13</u>	<u>10</u>	-3
•	•	•	
•	•	•	
사무운영서기보	2		
<u>수석전문관 또는 행정전문관</u>	<u><신 설></u>	<u>3</u>	+3